

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3-210호

행정처분 사전통지

「건설기술진흥법」(구 건설기술관리법)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1월 28일

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

1. 대상

| 성명 | 소재지 |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신○연 | 경기도 시흥시 거북섬남로 이하 생략 | 업무정지 12개월 (건설기술경력증 대여) |
| 이○희 |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2길 이하 생략 | 업무정지 12개월 (건설기술경력증 대여) |

2.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

| 성명 |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| 근거법령 |
|-----|---|---|
| 신○연 |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혐의 - (주)에스에이치건설(2018.8.~2022.7.) |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[별표1] |
| 이○희 |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혐의 - (주)에스에이치건설(2018.8.~2022.8.) |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[별표1] |

3. 의견제출

- 제출기한 : 2023. 12. 29.(금)
- 제출처 :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
연락처 : 02-2110-6730 / 팩스 : 02-2110-0682 / 전자우편 : jmy8768@korea.kr
- 제출방법 : 구술·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(의견제출서)

4. 안내사항

-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(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)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(02-2110-673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